금융위원회 **보 도 참 고 자 료**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4. 20.(수)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	책임자	팀 장 송병관 (02-2100-2690)
		담당자	주무관 고광순 (02-2100-2692)

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-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(4.20.) 조치 의결-

주요 내용

□ **증권선물위원회**는 4월 20일 제8차 회의에서, **회계처리기준**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**기전산업㈜**에 대하여 **검찰통보, 감사인지정**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※ **비상장사**인 기전산업㈜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**회계감사기준**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**한국공인회계사회**(위탁감리위원회)에서 **감사업무제한** 등의 조치를 **이미 의결**하였습니다.

※ 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	책임자	팀 장 송병관 (02-2100-2690)
		담당자	주무관 고광순 (02-2100-2692)
<공동>	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	책임자	본부장 한진희 (02-3149-0361)
		담당자	팀 장 최현본 (02-3149-037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(붙임)

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(제8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2.4.20. 의결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기전산업㈜ 결산기 : 2016.12.31. 2017.12.31. 2018.12.31. 비상장법인 업종 :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	**【회사】** ① 재고자산 허위계상 ('16년 15,550백만원, '17년 15,550백만원) -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을 허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②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오류 ('16년 16,890백만원, '17년 15,954백만원) - 회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투자기업을 지분법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, 취득원가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을 과소계상함 ③ 자산·부채 상계 및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(상계: '16년 12,103백만원, '17년 12,017백만원, '18년 8,503백만원, 대손충당금: '16년 6,903백만원, '17년 7,003백만원, '18년 7,003백만원) - 회사는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임종단기차입금과 선급금, 보증금 등 자산을 상계하였으며, - 상계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④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('16년 9,722백만원, '17년 9,876백만원, '18년 6,067백만원) - 회사는 선급금과 매출채권 등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⑤ 토지 재평가 미실시 ('18년 82,481백만원) - 회사는 재평가모형 적용대상 토지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중요하게 차이가 발생함에도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토지를 과소계상함	**회 사 :** - 과징금 ※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- 감사인지정 2년 - 담당임원 해임권고 - 검찰통보(회사, 대표이사, 담당임원)

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기전산업㈜	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 ①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16년 15,550백만원, '17년 15,550백만원) -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 수량을 허위로 기록하여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, - 감사인은 재고자산 실재성, 재고수불부 확인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②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16년 16,890백만원, '17년 15,954백만원) - 감사인은 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취득원가로 잘못 회계처리하였음에도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③ 자산·부채 상계 및 대손충당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(상계: '16년 12,103백만원, '17년 12,017백만원, '18년 8,503백만원, 대손충당금: '16년 6,903백만원, '17년 7,003백만원, '18년 7,003백만원) - 회사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권 등을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을 적절하게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- 감사인은 상계된 자산에 대한 검토 및 금융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기준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④ 대손충당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16년 9,722백만원, '17년 9,876백만원, '18년 6,067백만원) - 감사인은 회사가 매출채권 등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기준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⑤ 토지 재평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18년 82,481백만원) - 감사인은 토지의 재평가 필요성, 공시지가의 중요한 변동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기준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	가온공인회계사감사반: - 기전산업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- 과징금 ※ 감사인의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공인회계사 : 2인 - 기전산업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- 직무연수 4시간

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)